

## 경운대학교 산학융합연구소 운영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회과학, 자연과학, 공학 및 보건분야 등의 융합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연구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본 연구소는 경운대학교 산학융합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사업)** 연구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융합에 관한 연구
2. 산학융합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편찬
2. 연구발표회 및 초청강연회 개최
3. 학술연구논문지(산학융합연구논문지), 사례연구집 및 기타 도서 발간
4. 국가 및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학술연구 조사,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
5. 국가 및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업체의 위탁교육, 기술자 훈련, 기술지도 및 상담
6. 타 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
7.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지원

### 제2장 조 직

**제4조(기구)** 연구소는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구성)** 연구소에는 소장, 간사, 감사 및 운영위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, 연구위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소장)**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간사)** ①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

② 간사는 경운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감사)** ① 감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감사는 경운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연구교수)** ①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교육·연구업무에 전념하며, 외부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연구위원)**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
② 연구위원은 경운대학교 재직자 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국내외 저명인사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연구원)** ① 연구원은 연구소 사무와 연구업무를 보조한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12조(연구보조원)** ①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보조한다.

②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13조(조교)**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14조(운영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세부과제 책임자 및 경운대학교의 관련자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,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15조(운영위원회 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
2. 예산 및 결산
3.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6조(회의록)**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재 정

**제17조(재정)**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, 참여기관출연금, 교내지원금, 연구보조금(연구용역 간접비 포함)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18조(연구비)**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9조(용역)**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.

**제20조(예산·결산)** 연구소 예산의 편성,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행한다.

**제21조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22조(보고)** 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운영규정에 따른다.

**제23조(재산의 귀속)**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경운대학교에 귀속된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24조(해산)**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5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